

##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

# 인천시 구직청년을 위한 「2022 드림체크카드」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취업 및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사업(이하 ‘드림체크카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3. 14.

인천광역시장

### I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9~39세 인천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선정인원 : 640명 내외 선정 예정  
※ 선정인원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
- 접수기간 : 2022. 3. 14.(월) 14시 ~ 3. 31.(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dream.incheon.kr>)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발표 : 2022. 5. 4.(수) 예정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1인 최대 300만원)  
- 지급방법 : 드림체크카드 30만원 + 인천e음 20만원
-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용  
- 구직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인천 청년센터 마루 연계)  
- 지원 중 취/창업 시 취업축하금 지원(6회분 전액 지원자 제외)

- 직접비 : 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
- 간접비 : 면접 준비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 생활비 : 의료비, 생필품, 의류비 등

### II 신청자격 세부 요건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자(본인)
- 2) 공고일 기준 만 19 ~ 39세 이하인 자(1982. 3. 15.부터 2003. 3. 14.까지 출생)
- 3)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공고일 이후 퇴사자는 신청불가)
- 4)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19~34세 : 120%초과~150%, 35~39세 : 50%초과~150%)
- 5)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위 자격 조건은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

- 1)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 시 거주 중인 자
- 2) 나이 : 공고일 기준 만 19 ~ 39세  
※ 주민등록상 1982년 3월 15일 ~ 2003년 3월 14일 생
- 3) 미취업 : 미취업자(미창업자)만 신청가능  
- 미취업 기준 : 고용보험(상용) 미가입, 사업자 미등록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 단, 휴업신고를 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 4) 중위소득 : (19~34세) 120%초과~150%, (35~39세) 50%초과~150%  
- 3개월동안 사업신청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 평균으로 산정  
- 중위소득 120% 이하(35세 이상의 경우 50% 이하) 청년의 경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선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지만(35~39세는 50%) 재산기준 및 취업경험 요건 미달 등으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은 「불인정 통지서」 제출 및 확인 후 지원가능
- ① 중위소득 인정액 기준표  
- 만19~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구간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112 초과 102,842 이하	36,122 초과 77,067 이하	해당없음
2인	137,178 초과 171,393 이하	129,070 초과 175,541 이하	138,878 초과 173,710 이하

3인	177,454 초과 223,722 이하	184,453 초과 242,987 이하	180,075 초과 227,649 이하
4인	216,279 초과 272,614 이하	233,478 초과 303,435 이하	219,871 초과 279,532 이하
5인	254,658 초과 319,763 이하	281,796 초과 354,661 이하	260,234 초과 334,652 이하

- 만35~39세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50% 이하** 구간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4,447 초과 102,842 이하	23,682 초과 77,067 이하	해당없음
2인	74,447 초과 171,393 이하	23,682 초과 175,541 이하	75,079 초과 173,710 이하
3인	95,330 초과 223,722 이하	62,567 초과 242,987 이하	96,204 초과 227,649 이하
4인	116,785 초과 272,614 이하	106,459 초과 303,435 이하	118,045 초과 279,532 이하
5인	137,178 초과 319,763 이하	129,070 초과 354,661 이하	138,878 초과 334,652 이하

② 중위소득 산정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미혼) 부·모·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 형제·자매 포함여부는 선택

※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여부는 선택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3개월 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변동사항 반영하여 인원 산정

5) 최종학력 :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이하, 대학(원) 졸업·중퇴·수료자

- 공고일 기준 학교에 재(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

구분	재(휴)학생	졸업생	
①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참여불가	참여가능	
② 2~4년제 대학(원) 등 각종 학교	일반대학(원)		참여불가
	야간대학(원)		참여가능
	원격대학		참여가능
	학점인정제		참여가능
③ 기타 학교	참여불가		

\* 졸업유예, 졸업예정은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

1)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2) 2022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사업 지원기준 미충족자

3) 공고일 현재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자

\*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수혜 이력있을 시 신청불가(21년 11월 19일까지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더라도 의료, 교육, 주거 급여만 수급받는 경우 신청가능

4) 2019~2021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

\* 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종료,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다도 참여 불가

5)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6) 기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동시참여 불가

- 지원금 개시 예정일 6개월 이내 참여이력 보유자(2021년 11월 19일 이후)

- 그 외 본 사업에서 동시(중복) 또는 순차참여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나, 동기간 참여되는 타사업에서 우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시·순차참여 불가할 수 있음

사업명	동시 참여		순차 참여	
	가능	불허	종료 직후	종료 6개월 후
생계급여		0	0	
실업급여		0		0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타 지자체 유사 구직활동 지원사업		0		0
내일배움카드	0		0	
직업훈련		0		0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0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0	0

○ 참여자 의무사항

- 구직활동 실적 및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매월)

→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제출 시 지급중단

- 드림체크카드 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OT) 참석

→ 미참석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드림체크카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기간 내 2회 의무 참여

→ 미참여 시 지원중단

- 인천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취·창업, 타기관 구직활동 참여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 참여중단 신청서 제출

→ 미제출시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중단

### III 제출서류 안내

- 1)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2) 해당파일 스캔 후 홈페이지 업로드(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 \* 출력된 문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한글 또는 워드 작성파일과 화면 캡처는 불인정될 수 있음
- 3)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3/31, 17시) 기준 홈페이지 업로드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 업로드 되지 않은 구비서류 있을 시 미신청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통지서 서류의 경우 4/30일 자정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보완제출 가능)
  - ※ 모집공고 시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추가공고 진행 시 서류 제출기한까지 보완 서류 추가 제출 완료 시 모집대상으로 인정 가능

- 제출처 : 홈페이지 업로드 (<http://dream.incheon.kr>)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및 발급하여 스캔 후 첨부파일 업로드
- ※ 제출서류별 발급방법은 홈페이지 (<http://dream.incheon.kr>) 내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 [필수 제출]

- 온라인 참여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미혼 : 부모님 기준, 기혼 : 본인기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가족구성원) 각 1부.
  - \* 건강보험료 합산에 포함된 가족구성원 모두 한 장에 작성
- 건강보험료 3개월 납부확인서 각 1부. (21. 12. ~ 22. 2.)
  - \* 신청에 포함된 가족구성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모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가족구성원 모두)
  - \* 미혼 : 부, 모, 본인 / 기혼 : 배우자, 본인, 자녀

#### [해당자만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주 30시간 미만 근로 아르바이트 중인 경우만 해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통지서 1부. (2021. 1. 1. 이후 발급분 인정)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탈락된 경우 필수 제출
- 코로나19 실적여부 증빙서류
  - 코로나19 가산점대상자 신청서 1부.
  - 코로나 실적가구
    - ① 실직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② 휴직 :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증명원 1부.
    - ③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1부.
- ※ 필수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 자료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안내 ※신청서식 : 드림체크카드 홈페이지(<http://dream.incheon.kr>)

구 분		제출안내	
본인	1.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신청자 오기 입력 시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정보 기입	
	2.구직활동계획서 (온라인 작성)	▪ 구직활동 목표 및 계획, 이력서 형식의 계획서 내용 작성	
	3.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이전 발급분 불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포함하여 발급(누락 시 신청불가)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 이력 전체 이력 및 병역사항을 조회하여 발급	
	4.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이전 발급분 불가) ▪ 본인이 최종으로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발급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 학력으로 간주함 ▪ 해외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필요	
	5.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이전 발급분 불가) ▪ 미혼인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기혼인 경우 본인 기준 발급	
필수	아래 6~8 서류 : 미혼(부,모,본인), 기혼(본인,배우자,자녀) 필수 ▪ 그 외 중위소득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원(형제자매,조부모 등)은 <b>개인정보동의, 건강보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산정대상 여부 결정</b>		
	본인 및 가구원	6.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서 한장에 신청인 및 가구원 전원 작성 ▪ 신청인 본인 필수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가구원 전원 필수 작성(누락 시 지원 불가) ※ 작성인 자필 서명 필수(누락 시 불인정)
		7.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및 가구원)	▪ 2021년 12월 ~ 2022년 2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 발급 및 제출 ▪ 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로 대체
8.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미혼 : 본인, 부, 모 (필수) 및 형제/자매(선택) 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 기혼 : 본인, 배우자 (필수) 등 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해당자 (선택)	9.근로계약서	▪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인적사항 및 근로조건, 기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10.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통지서	▪ 2021. 1. 1. 이후 발급분 인정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지만(35~39세는 50%) 재산기준 및 취업경험 요건 미달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은 필수 제출	
	11.코로나19 가산점 신청서	▪ 실직 : 해당 가구원의 실적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 ▪ 휴직 : 휴직 처분사항이 기재된 휴직증명원 제출 ▪ 휴/폐업 : 국세청에서 발급된 휴/폐업 사실 증명원 제출	

○ 구비서류 발급 방법

구분	발급방법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li> <li>주민센터(무인발급기)</li> <li>※ 접속링크(<a href="https://www.gov.kr/portal/main">https://www.gov.kr/portal/main</a>)</li> </ul>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li> <li>주민센터(무인발급기)</li> <li>※ 접속링크(<a href="https://bit.ly/3BMHoLw">https://bit.ly/3BMHoLw</a>)</li> </ul>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li> <li>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77-1000</li> <li>주민센터(무인발급기)</li> <li>※ 접속링크(<a href="https://www.gov.kr/portal/main">https://www.gov.kr/portal/main</a>)</li> </ul>
최종학력 관련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등</li> <li>주민센터</li> <li>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신청 후 방문수령)</li> </ul>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li> <li>홈택스(www.hometax.go.kr)</li> <li>세무서 ※ 사업자등록 유무 관련 내용 서류, 소득관련 내용X</li> <li>※ 접속링크(<a href="https://bit.ly/3tpKv8v">https://bit.ly/3tpKv8v</a>)</li> </ul>

IV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22. 3. 14.(월) 14:00 ~ 3. 31.(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드림체크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구분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dream.incheon.kr">http://dream.incheon.kr</a> )접속
회원가입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참여신청	드림체크카드 "참여신청" 메뉴 접속 후 신청
신청서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등 작성
구비서류제출	구비서류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촬영된 파일) ※ 파일형식은 PDF 또는 JPG 파일로 통일

V 선정 기준

- 1차 : 정량적 평가(최종인원의 120% 내외 선발)
  - 기준중위소득 및 미취업 기간, 인천시 거주기간으로 평가

항목 (배점)	기준 중위소득 (40점)	미취업기간 (30점)	인천시 거주기간 (30점)	코로나19관련 가산점(10점)
평가 내용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 산정	최종학력 졸업일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기간	코로나19 관련 실적 가구

- ※ 동점자 발생 시 건강보험료 부과액(%)→미취업일수→인천시 거주기간 순으로 평가수치가 높은 인원 우선선발
- 2차 : 정성적 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구직활동계획서 내용을 평가하며,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구체성 등 심사
  - ※ 단, 활동계획이 부적정하거나, 취업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VI 최종선정 및 발표

- 일 시 : 2022. 5. 4.(수) 예정
  - \* 발표 일정은 심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확인,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 목적 :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시기 : 최종 대상자 발표 후 2주 이내
  - 필수 확인사항
    - 1) 드림체크카드 및 인천e카드 개설, 서약서 제출 (사업 오리엔테이션 시 안내)
    - 2) 기타 카드사(은행) 및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등
    - 3)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전 취업 등으로 자격상실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인천TP 사정 및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진행방식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VII 기타 유의사항

- 참여신청은 온라인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본인이 기재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필수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으로 입력 요망
-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반드시 자진하여 신고
- 지원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의 경우 반드시 신고
- 드림체크카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직업 훈련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며, 불참 시 지원중단 처리
- 대리결제를 통한 현금화,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중단,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만 해당)는 드림체크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생계급여 대상자는 아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 발생 할 수 있음
-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 할 수 있음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72~3)

## 【붙임】 가구소득 산정 방식

### < 중위소득 산정대상 및 제출서류 >

#### 1 미혼인 경우(참여자 기준)

- (원칙) 부·모·본인은 기본(필수) 산정대상
  -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산정대상 포함가능(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 (심사)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확인

#### < 확인 사례 >

##### ① 부·모 모두 있는 경우

- 가. 가구원 수 : 3인, 부·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 나.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 건강보험 서류

##### ② 한부모 가정(사별, 이혼 등)

- 가. 가구원 수 : 2인
- 나. 제출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본인 건강보험 서류
  - ※ 위 서류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 기준으로 제출

##### ③ 부·모 모두 없는 경우 (사망, 실종 등)

- 가. 가구원 수 : 1인
- 나. 제출서류 : 1인가구 증빙자료,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건강보험 서류

##### ④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경우

- 가. 가구원 수 : 부·모·본인+형제·자매 포함 인원 수(부·모 중 없는 인원 제외)
- 나.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형제·자매 건강보험 서류
  - \* 단, 중위소득 기준 충족을 위해 소득산정 간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포함 또는 제외시킬 수 있음

## 2 기혼인 경우(참여자 기준)

- (원칙) 본인·배우자·자녀는 기본(필수) 산정대상
  - ※ 동거 중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포함가능  
(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 (심사)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확인
- (확인)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을 통해 확인

### < 확인 사례 >

- ① 본인·배우자만 있는 경우
    - 가. 가구원 수 : 2인, 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나.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건강보험 서류
  - ② 본인·배우자·자녀 모두 있는 경우
    - 가. 가구원 수 : 2인+자녀수,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나.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 서류
      - ※ 단, 19세 미만 미성년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 생략 가능
  -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 동거 중인 경우
    - 가. 가구원 수 : 2인+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수,  
본인+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합산
    - 나. 제출서류 :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위 가구원의 건강보험 서류
- ※ 한부모 가정(사별, 이혼 등)  
→ 본인이 이혼한 경우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미혼 기준에 해당  
※ 자녀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불가

## 3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로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원칙)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부 또는 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는 것이 증빙 가능한 경우 가구소득 산정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 ※ 단, 단순 불화 등으로 인한 관계단절의 경우 1인가구로 인정 불가

- ① 이혼소송 증으로 사실상 부 또는 모와 관계단절  
→ 이혼소송·심판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아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
- ② 교도소 등 수감되었으며 관계단절  
→ 수용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피부양 관계단절(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될 필요 없음)

※ 기타 관계단절 등 특이사항의 경우 "[붙임2]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구비서류"내용 참고